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035600 군 박사과정 전문학위 교육과정 선발 시 부사관 차별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군 박사과정 전문학위 교육과정 선발 시 부사관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각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인데, 피진정인은 부사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

가. 피진정인이 박사과정 전문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장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은 국외 위탁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장교 과정의 경우 많이 개설되어 있는 반면 부사관 과정은 1~2개에 불과하여 부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이 군 내 근무평정을 운영함에 있어, 상급자가 하급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하급자인 부사관이 상급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미래전 양상 변화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등에 대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군인의 석·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학위교육과 능력개발교육으로 구분된다.

주간 민간대학·국방대 석·박사과정 및 학사과정에 위탁하는 전문학위 교육은 연 300~350여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중 박사과정은 사관학교 교수, 각 군 본부 주요 정책부서 등 전문인력 직위에 활용 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연 20여명 수준으로 선발하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장교만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주·야간 및 주말 민간 대학·국방대 석사과정 및 학사과정에 위탁하는 능력개발 교육은 연 4,000여 명을 선발하여 시행하고 있고, 부사관도 지원 가능하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국외 위탁과정 중 국외군사교육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휘참모대·병과학교·국외연수 과정으로 구분된다.

2021년 기준 지휘참모대교육의 경우 모든 과정을 장교 대상으로 운영하여 73명을 선발하였지만, 병과별 선진 군사교리 및 신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병과학교의 경우 장교 206명, 부사관 35명, 군무원 14명을 선발하였다. 아울러 국외연수의 경우 장교 117명, 부사관 31명, 군무원 19명을 선발하였는바, 부사관 과정이 1~2개에 불과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근무성적평정 제도는 개인의 근무실적·능력·자질 등을 평가하여 개인의 능률 증진과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휘권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휘감독자에게 평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것은 그 필요 목적에 따라 검토될 사항이지, 신분별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법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군인사법」 제17조(임기) 제5항에서는 “전문인력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전문인력 직위)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15조(전문인력 직위)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軍需武官)을 제외한 외국 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3. 전산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 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 가. 국방대학교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와 기본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 나.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기능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기능전문직위"

라 한다)

5.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 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나. 피진정인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및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에 전문인력 직위를 다음과 같이 장교로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①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1. 인사·조직 및 교육 분야
2. 정책기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4. 군수정책 분야
5. 국방관리 분석 분야

②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1. 전산 분야: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2. 연구개발 분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③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 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한다.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영관급 장교 및 위관급 장교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1.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 2.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

다. 각 군별 최근 3년간 국내·외 위탁교육 계획은 <별지 1>과 같다.

라. 「군근무성적 평정규정」 제4조(평정자와 승인자)에서는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 직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마. 2017년부터 2020년 박사전문화위 과정 복귀한 97명의 복귀 후 1차 보직상황을 살펴보면 48명은 교수 및 교관 직위로, 나머지 47명은 일반부대로 배치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평등권에 대한 일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이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데, 이러한 행복추구권에서 “개인이 일정한 사적 사안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헌법재판소 2003. 5. 15.자 2001헌바98 결정 등). 자기결정권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기운명결정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권리인 자기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7. 3. 27.자 95헌가14 결정)고 할 것이다.

2) 전문학위 과정에 부사관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에 따라 전문인력 직위 대상을 장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군에서는 장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학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박사과정은 사관학교 교수, 각 군 본부 주요 정책부서 등의 전문인력 직위에 활용 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연 20여명 수준으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직무 특성상 부사관 직위의 전문인력은 양성하고 있

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제한이 합리적인지 살펴보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입법자의 자의성 여부만을 심사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완화된 심사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법률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극적으로 자의적인 차별인지 여부만을 심사”(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0헌마110 결정)하며,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그 차별이 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②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③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494 결정)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서 피진정인이 전문학위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부사관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으로부터 전문학위 교육(박사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중 복귀한 97명의 복귀 후 보직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진정인이 사전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해두고 그 직위에 필요한 전문학위 교육(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직위에 보직되기 보다는, 전문학위 교육(박사

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가 전문학위 교육(박사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인력 직위와 무관한 다른 직위로 보임되는 경우도 있고, 교수 및 교관 직위로 배치된 48명중 “외국어, 체육, 수학, 전산 등 반드시 장교경력의 특수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 전공의 보직과정이 다수이고 일반부대로 배치된 장교 47명중 산업공학 전공자가 인사 보직장교를 담당하거나 전산학 전공자가 신기술 예산담당 업무에 보직되는 등 학위 전공과 직접 관련 없는 임무나 부대로 보임된 장교도 5명이상으로 통상적인 장교 인사보직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 및 교관 요원의 경우 전문인력 직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국방대학교의 교수요원 중 민간 위촉직 또는 군무원 등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율이 45%에 이르고, 각 군의 사관학교에서도 군무원 등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율이 최대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직위 특성 상 부사관이 임용될 수 없어 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기 교수요원에 위관급이나 군무원 출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사관을 배제한 평등권 침해로 보인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부사관의 전문학위 교육은 관련 법령상 제한하고 있지 않고 박사 수준의 학문적 지식이 필요한 직위 소요가 없어서 미시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에서는 전문인력 직위를 영관급 및 위관급 장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사관 직위 소요가 있더라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군인사법」상 전문인력 직위는 사실상 국방분야 업무 대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은 계급이나 책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동일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등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부사관의 전문성이나 실무적 역량이 더 중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전문학위 교육(박사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부사관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분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로서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1> 국방 전문인력 세부직위

구분	정책전문	국제전문	전산 및 연구개발	특수전문	기술전문	획득전문
세부 직위	인사, 조직, 교육 정책기획, 군사전략, 작전분야 전력정책 및 소요 기획 군수정책 국방관리 분석	외국 주재 무관 직위	정보체계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관련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직위	국방대, 사관학교 등 교수	특수한 기술 기능 임무 부대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	획득전문 분야, 외국주재 군수무관

뿐만 아니라, 진정인은 군인에게 배정된 국비지원 박사과정을 진학하고자 하여도 부사관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못함으로써 진정인의 미래생활 설계 등 자기생활영역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당하여 궁극적으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진정인이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을 장교만 대상으로 운영하

는 것은 진정한 등 부사관에 대해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군 보직 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 국방력 강화, 인재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적절한 수단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국방부장관에게, 전문학위 교육과정 선발 시 부사관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국외 위탁과정에서 다수의 과정이 운영되는 장교와 달리 부사관 과정은 1~2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진정인이 제출한 국외 위탁과정 실적을 살펴보면 지휘참모대교육의 경우 과정이나 업무 특성상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병과학교나 국외연수의 경우 부사관도 다수 선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사관 신분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현행 군 내 근무평정구조로 인하여 하급자인 부사관이 상위 직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군 내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과 관련해 피진정인의 재량이 인정되고, 「軍근무성적 평정규정」 제4조(평정자와 승인자)에서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 직위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진정인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설령 불공정한 평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 군에서 별도의 이의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현행 제도가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한다.

2021. 9. 6.

위원장 이 상 철

위원 문 순 회

위원 김 수 정

<별지 1>

1. 각 군별 최근 3년간 국내·외 위탁교육 계획

가. [OO군 국내·외 위탁교육 계획]

구 분	전문학위교육	국외군사교육	능력개발교육
선발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훈령 및 육군 규정상 선발 및 자격기준 적용 · 자질, 품성, 업무능력 우수자 중 수학능력 고려 선발 · 교육이수 후 활용성, 병과별 인력운영, 임관연도, 유형, 특기별 양성수준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과 전문성, 연관성, 군 정책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지원자 우선 검토 · 학위과정별 전공학문 선택 범위 기준 고려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의 가산복무가 가능한 자 · 군위탁생규정 제5조(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자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선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 		
선발 대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 대위~소령 · 석사: 중위~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국제·기술, 기능, 교수, 국방관리, 사이버 ·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 중위~대위 - 군의관: 소위~중위 · 선발 과정별 활용성, 인력운영 등 고려 지원 자격 한정 · 석·박사는 동일학위 전공자를 우선 선발 하며, 차순으로 유사 학위 전공자를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참대: 소령(전)~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군사대학 수료자 · 기타: 하사~대령 · 연합작전전문가 과정: 영어권 교육 우수자 · 해외지역전문가 과정: 해당국 교육, 외대 어학, 제2외국어 우수자 · 전투전문가 과정: 부사관 특수전과정은 화기·폭과 주특기 인원 · 기술전문가 과정: 병과/특기 근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군 정책 활용 가능 학문 · 병과·특기별 전문 기술 습득 가능 학문
선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선발심의 →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별 지원자 종합, 선발제한자 파악 · 학위취득 목표, 선발 우선순위 고려 심의 · 선발결과 하달 및 임명, 등록금 지급

나. [OO군 국내·외 위탁교육 계획]

구 분	전문학위교육	국외군사교육	능력개발교육
선발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질, 인성 및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우선 선발 ·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SMART Navy" 건설 등 해군 핵심과제 구현을 위한 적임자 선발 · 전문인력 인사 연계성 고려 활용분야에 맞게 선발 · 연합·합동작전, 첨단전력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적임자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연관성 강화를 위해 병과별 학과 / 전공 범위 고려 선발 · 직무능력향상, 군내 활용 가능한 전공 지원자 선발 · 미래 인재양성과 연계하여 선발 * 신기술, 연합작전, 해양특화 분야 등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의 가산복무가 가능한 자 · 군위탁생규정 제5조(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자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선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 		
선발 대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교: 전문학위/국외군사(국외연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평정, 군사교육성적, 근무경력(전방근무), 상훈, 어학성적, 지휘관 및 위원회 평가 (박사과정은 면접평가 시행) · 준·부사관, 군무원: 국외군사(국외연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평정, 군사교육성적, 상훈, 어학성적, 지휘관 및 위원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과/직별(직렬)별 직무연관성 고려 · 학위 및 전공분야 우선 순위 고려 · 평가요소에 따른 적격자 선발 * 근무평정, 어학성적, 학교위치에 따른 수학 가능여부 등
선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어학능력평가 (제2외국어) → 최종 선발심의 →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별 지원자 종합, 선발제한자 파악 · 개인자력, 수학기능 여부 등 고려 심의 · 선발결과 하달 및 임명, 등록금 지급

※ 해병은 해군 선발계획과 유사하여 별도 미작성함.

다. [OO군 국내·외 위탁교육 계획]

구 분	전문화위교육	국외군사교육	능력개발교육																														
선발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임무 수행을 위한 역량 및 품성을 갖춘 병과별 우수·성실근무자 선발 · 병과 內 균형적 인재양성을 위해 병과별·과정별 적정 선발 대상기수 지정 · 국대원/지참대 과정은 지역전문가 및 무관 예비자 원 양성 목적 고려 적격자 선발 · 객관적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과정별 활용성을 고려하여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연관성을 위해 병과별 학과/전공 범위 고려 선발 · 주임무 전념 성실 근무자 선별하여 선발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의 가산복무가 가능한 자 · 군위탁생규정 제5조(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자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선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 																																
선발 대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위교육: 장교 중 임관시기에 따라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박 사</th> <th>석 사</th> <th>학 사</th> </tr> </thead> <tbody> <tr> <td>조종 병과</td> <td>임관 후 16년차 이하</td> <td>임관 후 7~16년차</td> <td>임관 후 10년차 이하</td> </tr> <tr> <td>일반 병과</td> <td>임관 후 11년차 이하</td> <td>임관 후 7~14년차</td> <td>임관 후 5년차 이하</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군사교육: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국외군사교육</th> <th rowspan="2">국외연수</th> </tr> <tr> <th>국대원</th> <th>지참대</th> <th>병과교</th> </tr> </thead> <tbody> <tr> <td>조종 병과</td> <td>대령~대령(진)</td> <td>소령</td> <td>대위~중령</td> <td>대위~중령</td> </tr> <tr> <td>일반 병과</td> <td>-</td> <td>소령</td> <td>과정별 상이</td> <td>과정별 상이</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 지휘추천, 근무평정, 어학, 군사교육 성적, 상훈, 가감점, 위원회 평가 		구분	박 사	석 사	학 사	조종 병과	임관 후 16년차 이하	임관 후 7~16년차	임관 후 10년차 이하	일반 병과	임관 후 11년차 이하	임관 후 7~14년차	임관 후 5년차 이하	구분	국외군사교육			국외연수	국대원	지참대	병과교	조종 병과	대령~대령(진)	소령	대위~중령	대위~중령	일반 병과	-	소령	과정별 상이	과정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과/특기에 따른 직무연관성 고려 · 평가요소에 따른 적격자 선발 * 근무평정, 어학성적, 학교위치에 따른 수학 가능여부 등
구분	박 사	석 사	학 사																														
조종 병과	임관 후 16년차 이하	임관 후 7~16년차	임관 후 10년차 이하																														
일반 병과	임관 후 11년차 이하	임관 후 7~14년차	임관 후 5년차 이하																														
구분	국외군사교육			국외연수																													
	국대원	지참대	병과교																														
조종 병과	대령~대령(진)	소령	대위~중령	대위~중령																													
일반 병과	-	소령	과정별 상이	과정별 상이																													
선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접수 및 지휘추천 → 병과별 분야심의 → 최종 선발심의 →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별 지원자 종합, 선발제한자 파악 · 개인자력, 수학기능 여부 등 고려 심의 · 선발결과 하달 및 임명, 등록금 지급 																														

2. 최근 3년간 신분별 위탁교육 선발현황

가. 전문학위교육*(주간 박사·석사·학사)

(단위: 명)

구 분 *선발시기 기준	계	국 외			국 내			
		소계	박사	석사	소계	박사	석사	학사
2020년	357	48	4	44	309	29	249	31
2019년	339	47	5	42	292	22	238	32
2018년	301	59	5	54	242	19	191	32

※ 활용목적·직위(교수요원, 정책부서 등) 고려 장교 선발

나. 능력개발교육(주·야간 및 주말 석사·학사·전문학사)

(단위: 명)

구 분	장 교 (준사관 포함)	부사관	군무원	계
2020년	1,693	2,976	396	5,065
2019년	1,536	2,526	367	4,429
2018년	1,396	2,209	429	4,034
계	4,625	7,711	1,192	13,528

다. 국외군사교육(지휘참모대, 병과학교, 국외연수)

(단위: 명)

구 분	장 교	부사관	군무원	계
2020년	317	39	6	362
2019년	325	26	8	359
2018년	357	31	6	394
계	999	96	20	1,115

3. 사관학교·국방대학교 교수 신분별 현황

가. OO군사관학교

구 분	소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기타 (민간위촉 등)
		영관급	위관급			
2019	153	83	50	-	20	-
2020	153	85	50	-	18	-
2021	148	82	49	-	17	-
비율('21년)	100%	55%	33%	-	12%	-

나. OO군사관학교

구 분	소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기타 (민간위촉 등)
		영관급	위관급			
2019	68	36	18	-	14	-
2020	65	36	15	-	14	-
2021	71	37	18	-	16	-
비율('21년)	100%	52%	25%	-	23%	-

다. OO군사관학교

구 분	소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기타 (민간위촉 등)
		영관급	위관급			
2019	94	54	28	-	12	-
2020	95	53	30	-	12	-
2021	97	49	34	-	14	-
비율('21년)	100%	51%	35%	-	14%	-

라. OO사관학교

구 분	소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기타 (민간위촉 등)
		영관급	위관급			
2019	24	14	10	-	0	-
2020	27	17	8	-	2	-
2021	26	16	9	-	1	-
비율('21년)	100%	61%	35%	-	4%	-

마. OO학교

구 분	소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기타 (민간위촉 등)
		영관급	위관급			
2019	83	44	37	-	2	-
2020	70	37	31	-	2	-
2021	81	41	38	-	2	-
비율('21년)	100%	51%	47%	-	2%	-

바. OO대학교

구 분	소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기타 (민간위촉 등)
		영관급	위관급			
2019	57	30	-	-	3	24
2020	57	32	-	-	3	22
2021	55	31	-	-	3	21
비율('21년)	100%	55%	-	-	5%	40%

<별지 2>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행위

3. 「군인사법」

제17조(임기)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 ⑤ 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군인사법 시행령」

제15조(전문인력 직위)

-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5.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1. 인사·조직 및 교육 분야
 2. 정책기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4. 군수정책 분야
 5. 국방관리 분석 분야
- ②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1. 전산 분야: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2. 연구개발 분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 ③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한다.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영관급 장교 및 위관급 장교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1.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2.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